
2018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2018. 3.

동명대학교 입학지원팀

목 차

I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1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II .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1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III .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를 위한 대학의 노력	2
IV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3
1.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별 고사 현황	
2.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대학의 분석	
가. 면접 형태	
나. 면접 문항 예시	
V .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4
VI . 부록 : 대학 자체 규정	5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대학별고사 유형	전형명	계열	모집요강에 제시한 출제 범위(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면접· 구술고사	일반고출신자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
	일반고(군사학과)	인문사회계열													○
	창의인재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
	일반전형	인문사회계열													○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가. 규정명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나. 규정내용 : 부록 참조

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가. 위원회 명칭 : 자체영향평가위원회

나. 위원회 구성현황 : 총 7명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2명)

구분	직책 및 소속	성명	기능
위원장(당연직)	입학·홍보처장	이○○	-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의 반영에 관한 사항 -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위원(당연직)	기획처장	이○○	
내부위원(당연직)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	박○○	
내부위원(당연직)	입학지원팀장	이○○	
내부위원(임명직)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교원	한○○	
외부위원(임명직)	용인고등학교 교사	김○○	
외부위원(임명직)	장안제일고등학교 교사	전○○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세부계획	일정												비고	
	2017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대학별 고사(면접) 세부 평가 계획 수립				■	■									
대학별 고사(면접) 문제 출제위원 선정 및 사전교육						■	■	■						
대학별 고사(면접) 위원 선정 및 사전교육							■	■						
자체영향평가 위원회 평가									■	■	■	■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	
2019학년도 반영계획 수립												■	■	
홈페이지 게시													■	

III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를 위한 대학의 노력

1. 대학별 고사 면접 세부 평가 계획 수립

* 2017.08.17. 인성 및 품성 위주의 면접고사 세부 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 고사 면접 문제 출제위원 선정 및 사전교육

* 2017.09.29. / 2017.11.06. / 2018.01.17. 면접문제 출제위원 선정(위촉)

* 2017.10.19. / 2017.11.15.~11.16. / 2018.01.26. 면접문제 출제위원 사전교육 및 문제출제

3. 대학별 고사 면접 위원 선정 및 사전교육

* 2017.10.16. / 2017.11.03. / 2018.01.22. 면접위원 선정(위촉)

* 2017.11.16. 면접위원 및 진행위원 사전교육

IV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1.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별 고사 현황

대학별 고사 유형	운영 여부	선발 인원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고
논술	X	-	X	
적성고사	X	-	X	
면접 · 구술고사	0	1,075	0	
실험고사	X	-	X	
교직적성 · 인성검사	X	-	X	
신체검사	0	30	X	군사학과 졸업 후 장교임관 시 장교선발 신체검사 규정에 저촉되는지 판단 자료를 위한 것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 없음
실기고사	0	36	X	예체능학과
체력검정	0	30	X	군사학과 기초체력 평가를 위한 것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 없음

2.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대학의 분석

가. 면접 형태

- 1) 인성 및 품성위주 구술고사로 평가
- 2) 면접위원은 2명(1팀)으로 구성되며 수험생 1~5명씩 면접 진행(면접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수의 팀으로 운영)
- 3) 면접문제 출제 경향
 - 일반 상식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인성 및 품성(가치관, 예의, 품성 및 용모, 사회성)을 평가
 -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의사소통 능력(의사 표현력 및 논리성, 적절한 어휘 구사력, 사고력 및 논리적인 설득력)을 평가

나. 면접 문항 예시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학생)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며, 그 분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교 재학 중 학업 이외의 일에 도전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도전했던 이유와 노력한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대부분의 고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일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설명하시오.
-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약속시간은 지났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얼마만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지금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내 인생이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2018학년도 대학별 고사(면접)는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며, 인성 및 품성위주의 구술고사 형태로 운영됨
- 향후 대입전형 계획 수립 시 면접고사 형태를 2018학년도와 동일한 인성 및 품성위주로 시행할 계획임
- 대학별 고사(면접)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학본부(입학지원팀)의 관리·감독체계 유지

제0편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00-00-00~1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 대학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5명 이내, 외부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입학·홍보처장, 기획처장,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 입학팀장을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홍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예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7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